

'서비스업 사업장'에서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

위험성 평가란?

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·평가하고 이를 제거·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·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.

· 위험성평가 절차



관련법령 :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(위험성평가)

- 사업주는 건설물, 기계·기구, 설비, 원재료, 가스, 증기,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,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·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
- 제1항에 따라 유해·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, 절차, 시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-48호 「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」

- ※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.moel.go.kr ⇨ 법령마당
- ※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kras.kosha.or.kr ⇨ 공지사항

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(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14조)를 받을 수 있음

공단에서는 다음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

위험성평가 컨설팅	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내용 신청사업장의 일부(30~50%)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 실시
위험성평가 교육	교육대상 사업주 교육(모든 사업장), 평가담당자 교육(100인 미만 사업장) 교육시간 사업주(2시간) 및 사업장 평가담당자(8시간) 교육
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	인정대상 상시근로자 수 100인 미만 사업장 인정방법 사업장 현장심사 및 인정여부 결정

※ 「위험성평가 컨설팅·교육·인정」이 필요한 경우 "신청서"를 작성하여 공단 일선기관으로 제출

「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」을 받으면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.

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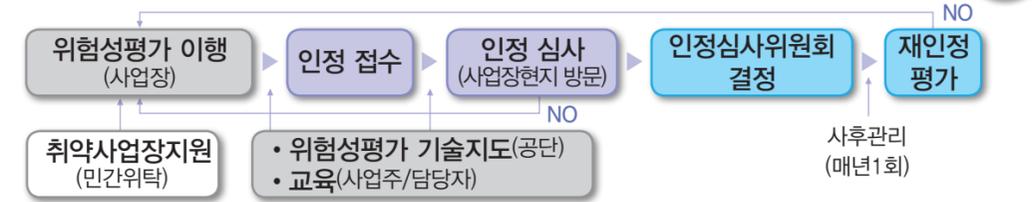
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.

위험성평가 인정신청 대상 사업장은?

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

※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로 봅니다.

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절차는?



-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「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」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(<http://kras.kosha.or.kr>)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-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/평가담당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는 경우 혜택은?

- 혜택 1** | 인정유효기간(3년)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.
- 혜택 2** |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용자금 신청시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혜택 3** |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「위험성평가」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법 제13조(안전보건관리책임자)

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(이하 "관리책임자"라한다)를 두어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.

9.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·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**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<500만원 이하 과태료>**

[시행규칙]

제11조(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)

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"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**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**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.

법 제14조(관리감독자)

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(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·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·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·보건점검 등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**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**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** 안전·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 **<500만원 이하 과태료>**

[시행령]

제10조(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)

① **법 제14조제1항** 본문에서 "안전·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"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
6. **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**에 기인하는 유해·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의 시행

법 제15조(안전관리자 등), 제16조(보건관리자 등)

[시행령]

제13조(안전관리자의 업무 등)

① **법 제14조제2항**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2의2. **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**에 관한 보좌 및 조언·지도

제17조(보건관리자의 업무 등)

① **법 제16조제2항**에 따라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4. **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**에 관한 보좌 및 조언·지도